

제주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50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 고 1. 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원

4. E

5. F

6. G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연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31.부터 2021.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F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9. 10. 접수 제898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F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항 및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10. 30. 접수 제108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11. 27. 접수 제119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7. 11. 27. 접수 제1191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19. 접수 제1028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20. 1. 3.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2020. 3. 31.부터 2020. 8. 30.까지 매월 30,000,000원씩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2018년경 증여계약을 인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므로(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단순히 증여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2017.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취소하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 B이 2017. 10.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F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

